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경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04일

3. 제안사유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명칭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
- “법무통계담당관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”
- “법무통계담당관실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실”

나.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다. 용어 정비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“타업무” → “다른 업무” / “문의” → “상담”
- “즉석 답변” → “현장 답변” / “실과” → “부서”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

- 안 제2, 4, 6, 7조에서는, 조직개편에 따른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(개정 2018. 10. 1.)의 개정에 따라 기존 법무통계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실을 법무혁신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실)로 변경함.

※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(개정 2018. 10. 1.)

제7조(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)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세정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**법무혁신담당관**을 둔다.

- 안 제2조에서는, “충청북도”에 대한 약어표기를 포함하여 이후 조항에 사용되는 “도” 명칭이 ‘충청북도 “를 의미함을 명확히 함.
- 안 제3, 6, 8조에서는, 기존 “시군” 또는 “시, 군” 그리고, “읍,면, 동”으로 표기된 것을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부호 사용 원칙에 따라 열거된 단위들이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가운데 점을 넣어 “시·군”, “읍·면·동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, 조문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, “문의”를 “상담”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함.

-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참고자료>

□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구성 및 운영 현황

- 상담요원: 8명 ('19. 2. 1. 기준)
 - 관세사(1), 변리사(1), 세무사(1), 지방행정전문가(1), 법무사(1), 변호사(3)

● 운영 현황

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

- 상담내용 :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사건 등의 무료상담
- 개설장소 : 도 홈페이지 → 정보공개 → 법/제도정보 →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
- 운영실적

구 분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건 수	281	99	75	85	22

② 찾아가는 이동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

- 상담지역 : 시·군별 민원실, 축제행사장
- 운영실적

구 분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횟수/건수	35회/415건	11회/195건	11회/105건	11회/103건	2회/12건